



- ▶ 2005. 4.7 배 포
- ▶ 총 3쪽 (붙임포함)

보 도 자 료

▶ 산업보건환경과 과장 김종효
사무관 김환궁

T E L : 2110-7135~38

E-MAIL khgung@dreamwiz.com

FAX : 503-4491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 소음저감시설 설치자금 지원

— 소요비용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

- 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소음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소요비용의 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비용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의 『CLEAN 사업장』 조성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 부담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주의 시설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소음시설 개선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자금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 한편 소음성난청 질환자는 '04년의 경우 266명으로 '03년 314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99년 20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 '03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는 2,108명으로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2,300명)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 '0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총 6,333개중 소음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이 전체의 95.6%(6,0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보도 참고자료〉

<표 1> 년도별 소음성난청 질환자 발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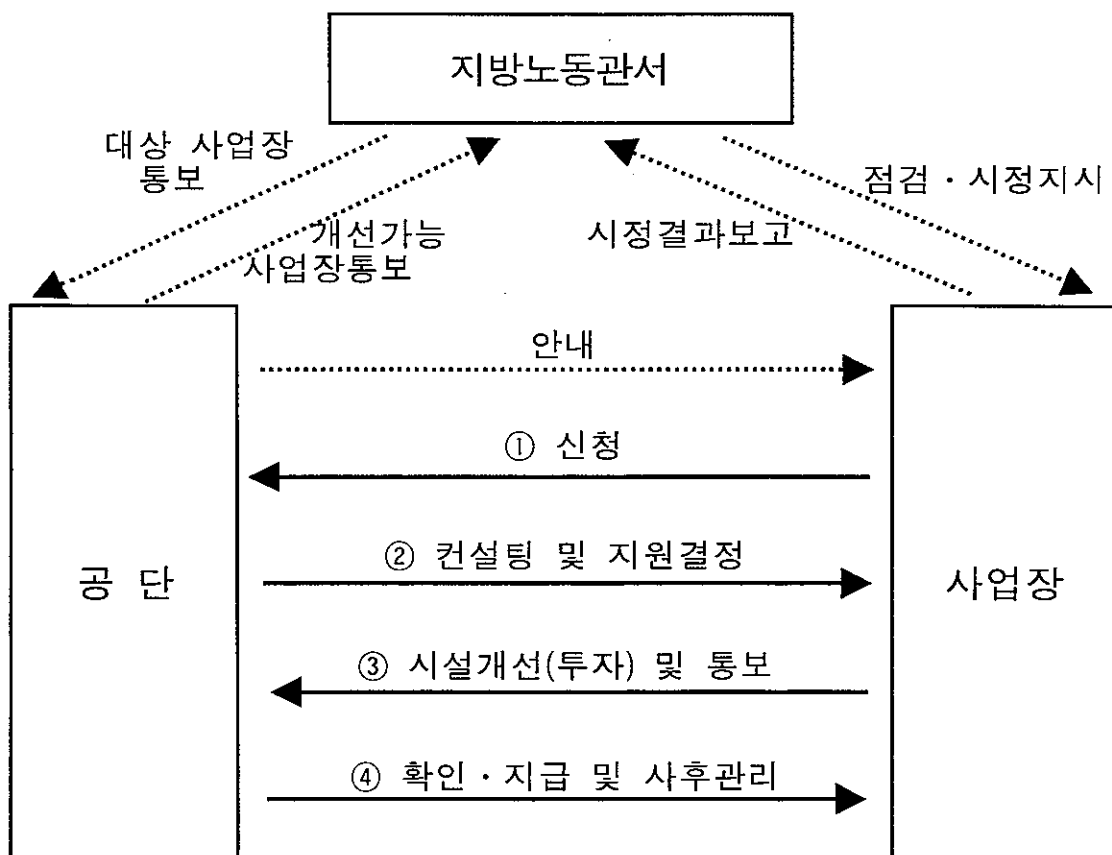
※ 년도별 소음성난청 204명 → 261명 → 287명 → 219명 → 314명 → 266명
질환자 발생 추이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표 2> 년도(반기)별 소음노출기준 초과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체 초과사업장수	6,267	6,380	6,694	6,440	6,552	6,209	6,267	6,403	6,547	6,333
소음 초과사업장수	5,724	5,911	6,210	5,980	6,097	5,702	6,041	6,075	6,312	6,056
점유율	91.3%	92.6%	92.8%	92.9%	93.1%	91.8%	96.4%	94.9%	96.4%	95.6%

<표 3> 지원절차



[고소음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Q&A]

Q :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은?

A : 1) 신청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신청 방법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대상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에 고소음 발생사업장 환경개선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우편, FAX, 인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Q : 보조금 지원 금액 및 지원품목은?

A : 1) 지원금액

-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업장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자금의 50% 보조금 지원하고 사업주 부담의 소요자금은 융자금으로 지원
- 일부 공정 또는 단위작업장소의 소음을 개선한 경우에도 자금 지원 가능

2) 지원 품목

- 소음 발생억제 및 전파방지설비
 - ▶ 흡음시설 및 방음시설
 - ▶ 소음발생원 격리 및 밀폐설비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 작업” 공정에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주요 소음발생 설비를 저소음 설비로 대체하는 설비
- 고소음설비의 자동화

Q : 작업환경 개선 완료 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A :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 개선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설비개선 등을 통해 소음수준이 개선 전에 비하여 5dB 이상 감소된 사업장(공정 단위 지원 가능)

Q : 고소음 발생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절차는?

A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신청(사업장) ⇒ 컨설팅(공단, 외부전문가)
※ 신청서 접수후 15일 이내 방문 실시

⇒ 자금지원 신청(사업장) ⇒ 자금지원 결정(심사위원회)
※ 컨설팅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 공단 제출

⇒ 시설 개선 ⇒ 투자완료 확인(개선효과 측정)
※ 자금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완료

⇒ 융자·보조금 지급
※ 개선효과 측정 및 확인 후 지급